BNP 파리바증권 내부자신고제도 안내

(내부자신고제도는 고객 불만을 처리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므로 해당 내용은 별도의 연락 채널을 통하여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BNP 파리바증권(이하 "당사")은 법과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고 BNP 파리바그룹의 Code of Conduct (행동강령)을 충실히 시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 중 하나로 내부자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내부자신고제도는 임직원의 범죄, 위법행위, 협박, 공익 저해, 법규나 규정의 위반, BNP 파리바 그룹 행동강령 미 준수 행위 또는 이러한 행위들의 은폐 시도 등의 정보를 인지한 경우 당사에 신고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내부자"라 함은 당사의 전·현직 임직원 및 공급업체, 고객과 같은 내·외부 이해관계자를 말합니다.
- 내부자신고제도를 통하여 신고한 내용에 대하여 신고자는 불이익이나 보복의 위험으로부터 보호를 받습니다.
- 내부자신고 제도를 악용할 시에는 신고자에 대한 징계 또는 고발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선의에 의한 내부자신고 제도의 이용은 설령, 신고 사실이 정확하지 않거나 신고에 따른 후속 조치가 일어나지 않더라도 신고자에 대한 징계 또는 고발 조치가 취해지지 않습니다.

Q1. 언제 신고를 해야 하나요?

임직원의 범죄, 위법행위, 협박, 공익 저해, 법규나 규정의 위반, BNP 파리바그룹 행동강령 미 준수 행위 또는 이러한 행위들의 은폐 시도 등의 행위가 일어났다고 믿을 만한 근거가 있을 때

Q2. 어떻게 신고를 해야 하나요?

신고방법은 신고자의 편의에 따라 아래의 채널 중 하나를 이용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된 내용은 당사의 준법감시부에서 접수합니다.

- 내부자신고 전용 이메일: bnppso-whistleblowing@asia.bnpparibas.com
- 내부자신고 전용 전화: (82) 2-2125-0518

Q3. 익명 신고가 가능한가요?

네, 익명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신고 접수자가 다시 연락할 수 있는 수단을 알려주시기를 권고합니다.

Q4. 신고자는 신고 내용에 대한 피드백을 받게 되나요?

네, 연락 수단을 남기신 신고자는 신고 접수 사실을 통보 받으며 조사 경과 및 결과에 대한 피드백을 받게 됩니다.

Q5. 비밀 보장이 되나요?

네, 내부자신고 접수자는 신고 사실에 대하여 비밀을 지키도록 훈련을 받고 비밀이 지켜지도록 내부 절차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